

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소관부서 : 여성보육과

제정 2012·10·29 조례 제 958호
일부개정 2023·7·5 조례 제195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외국인주민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, 이천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,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.
2. “다문화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.
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 -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부서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제4조(지원 대상) ① 이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「출입국관리법」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사업)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

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3·7·5>

1. 공통 지원 사업

- 가. 언어 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직업교육·훈련
- 나.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
- 다. 고충·생활·법률 및 취업 등에 관한 상담
- 라. 생활편의 정보 제공 및 문화·예술·체육행사 개최
- 마.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
- 바. 자녀 보육 및 교육 사업

2.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

- 가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
- 나. 다문화가족 성폭력 예방 및 양성 평등 교육
- 다. 다문화가족의 부부, 부모, 자녀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 교육
- 라.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적응교육
- 마.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·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
- 바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, 번역 서비스 제공
- 사. 결혼이민자 등에게 필요한 취업지원 및 교육 훈련 지원
- 아. 그 밖의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지원 사업 추진 등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제5조의 사업에 대한 일부 또한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평생학습 및 청소년수련관 등의 프로그램 중 이 조례의 목적과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개발·조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실태

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 협의회 구성·운영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원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「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 <개정 2023·7·5>

제8조(세계인의 날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, 시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“이천시 세계인의 날”로 하고,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

1. 기념식 및 문화·예술·체육행사
2.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
3. 명예 시민증 수여, 유공자, 단체 포상 및 표창
4. 그 밖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행사

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제2항의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는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·법인·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 또는 제5조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「이천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이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」는

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폐지한다.

부칙 <2023·7·5 조례 제195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